〈특집: 21세기 법학교육의 방향모색〉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방안에 대한 소견*

金 鍾 鐵**

Ⅰ. 머리말

법학교육제도와 법조인양성제도의 개혁을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로-스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 2005년 10월 말이니 벌써 1년이 넘었다. 이 법률안은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소관상임위인 교육위원회의 심의단계에서 여야가 그 대강에 대한 합의를 보았으나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문제와 연계하여 그 이후의 심의를 거부함으로써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민주화와 세계화라는 시대정신에 부응하기 위한 중요한 개혁과제[1)]가 엉뚱한 정치공세에 밀려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비생산적인 정쟁으로 중요한 국정과제를 표류시키는 후진성을 끌어안고 가야 하는지!

그러나 한편으로는 법률안처리의 지연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하여 좀 더 숙고할 수 있는 여유를 가졌다는 점에서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을 지 모르겠다. 그동안의 로-스쿨법률안과 관련한 논의

---

* 이 글은 2006. 10. 20 (금)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이 후원한 서울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학술회의 「21세기 법학교육의 방향모색」에서 발표한 것을 가필한 것이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귀한 말씀을 주신 박종보(한양대), 이재협(경희대), 이우영(서울대)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모든 오류는 필자의 몫임은 물론이다.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1) 법학교육의 개혁이 세계화시대에 가지는 함의를 개관한 것으로 김종철, "세계화시대의 법학교육의 과제와 전망", **저스티스**, 통권 제92호(2006), 149-167쪽; 안경환, "21세기 법학교육과 법학전문대학원", **서울대학교 법학**, 제45권 제2호(2004), 1-5쪽; 송상현, "세계적 관점에서 본 법학교육의 추세와 법학전문대학원 - 나라의 장래에 법학이 담당해야 할 역할", **서울대학교 법학**, 제45권 제2호(2004), 8-13쪽 참조.

는 새로운 교육제도 출범에 필요한 거시적인 제도적 장치의 구축에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간헐적으로 새로운 교육제도하에서의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에 대한 검토[2]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로-스쿨 체제에서 교육개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긴요한 미시적인 제도적 장치나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서울대학교 개교 60주년을 맞아 서울대 법학연구소가 "21세기 한국 법학교육의 방향모색"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그 결핍이 부분적으로나마 해소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로-스쿨 제도는 이전의 학부법학교육제도와는 여러 면에서 차별적인 운영방안을 요구한다. 무엇보다도 로-스쿨은 학부과정에서 다양한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법학을 교육하는 대학원 법학교육과정으로 그동안의 학부에서의 법학교육과정과는 교육의 대상이 가진 문제의식, 지식의 수준, 교육에 임하는 자세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또한 로-스쿨은 법률안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학문으로서의 법학연구 및 교육기관의 차원을 넘어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즉 교양법학교육의 수준을 넘어 전문법학교육을 지향[3]하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운영체계를 마련할 것이 요청된다. 예를 들어, 입학 및 졸업과 관련한 학사관리, 학생지원센터나 취업지원센터, 법학전문사서제도의 운영 등 전문성 배양에 긴요한 양질의 교육환경과 전문법학교육을 위한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 및 문화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 글은 이처럼 로-스쿨 체제에서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새로운 운영방안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글은 세 부분의 본론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운영방안의 기초가 되는 로-스쿨제도의 본질에 대한 개괄적 정리가 선결문제로서 필요하다. 둘째는 운영방안의 지

---

2) 예를 들어, 김성태・박상기・허영・이상윤・김상용,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추진 기획 및 방법 연구: 교과과목, 교과과정 및 교육방법", **법학연구**, 제9・10권(2000); 김재원, "미국의 법률가양성 및 교육제도 - Law School의 실무교육을 중심으로 -", **고시계**, 제460호(1995); 김재원, "미국의 법학교육", **법과사회**, 제10호(1994); 김정오,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 법학교육의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법과사회**, 제24호(2003); 이국운, "법학전문대학원의 헌법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법과사회**, 제26호(2004); 조상혁, "미국 법학교육방법의 변천과정", **중앙법학**, 제7권 제1호(2005); 황필규, "법학교육의 커리큘럼 개혁방안 - 민주적・공익적 법률가 양성을 위한 법학교육커리큘럼", 2005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엄 "사법개혁과 민주법학" 자료집(2005).

3) 김종철, "법학교육과 법률가양성제도 개혁의 방향: 개혁의 하드웨어적 측면", **법과사회**, 제24호(2003), 57-59쪽; 최대권, "법학교육・법학방법론 - Law School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37권 제1호(2003), 59쪽.

침이 될 수 있는 로-스쿨법령안과 인가기준에 대한 연구안의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로-스쿨의 본질에 맞는 운영방안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 비교제도적으로 참고할 점 등 세부사항을 주요항목별로 검토한다.

Ⅱ. 로-스쿨의 본질 - 전문법학교육기관

로-스쿨 논의가 답보를 면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로-스쿨의 본질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한 탓도 있다. 특히 법실무계를 중심으로 로-스쿨이 마치 사법연수원을 대체하는 연수기관으로 오해하는 견해가 팽배해 있다. 아마도 로-스쿨법안이 통과되면 현행 사법연수원제도가 폐지되도록 한 정책 때문에 그러한 오해가 생기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로-스쿨의 모델을 제공하는 미국에도 현행 사법연수원에서의 법실무연수 프로그램과 같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로-스쿨의 기능도 교육기능 외에 연구기능이 핵심적이다. 또 교육의 개념도 실무의 연수라기보다는 법원칙에 대한 이론적 학습이 중심이 된다고 보면 된다. 사례방법론(case method)으로 알려진 랑델식 교육법은 판례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판례들속에 나타난 법원칙을 발견하고 정립하는 법률가의 법적 사고를 배양하는 교육방법임은 잘 알려진 바와 같다. 결론적으로 로-스쿨은 "기초학문의 세례를 받은 학부졸업생을 상대로 학문수련의 방법으로 '법률가의 사고방식'을 체득하게 하여 양질의 예비법률가[4]를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5]이어야 한다.

법률가의 실무연수는 최소한의 기초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법률사무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실행되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법관과 검사는 변호사경력자 가운데 직급에 따라 일정한 법관 및 변호사 연수과

4) 익명의 심사위원 한 분께서 로-스쿨의 본질을 전문법학교육기관으로 하면서 로-스쿨이 예비법률가를 양성하는 것은 모순일 수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다. 그런데 여기서 '예비법률가'라고 명명한 것은 로-스쿨을 졸업하면 바로 변호사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변호사자격시험을 합격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므로 이런 표현이 전문법학교육기관으로서의 로-스쿨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5) 김종철,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소견", **동아법학**, 제37호(2005), 295쪽.

정을 거쳐 임용되는 법조일원화가 로-스쿨제도와 병행하여 실시되어야 법조양성제도 개혁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한가지 더 덧붙일 것은 로-스쿨은 법조인양성의 목적에만 기여하는 기관이 아니다. 한 사회의 법률문화와 법조실무의 발전, 그리고 대학이라는 교육제도가 지향하는 일반적 목적과 기대, 나아가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의 특별한 목적에 기여하는 기관이다. 연구와 사회참여를 통하여 법과 법을 필요로 하는 사회정책의 발전, 새로운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법영역과 법이론의 개발과 실현, 법학연구요원의 양성, 법학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인접학문의 요청에 대한 협력이 로-스쿨이 법률가의 양성 못지않게 수행해야 할 사회적 기능이다.[6]

결국 이러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로-스쿨의 운영방안은 다양한 교육목표와 교육환경을 통해 다양한 배경의 예비법률가를 양성하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두어져야 하고 그러한 목적은 자율성에 바탕한 자유경쟁을 기본전제로 해야만 최대한 실현될 수 있다.

Ⅲ. 로-스쿨 법안과 로-스쿨 운영방안

로-스쿨 법안과 로-스쿨 법안의 제정에 실질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마련한 로-스쿨법 시행령안(이하 시행령안)[7]은 로-스쿨 운영에 관한 일정한 요건과 원칙을 정하고 있다. 또 법령안에 기초하여 교육부에서 시안으로 제시한 인가기준은 로-스쿨 설치 및 운영에 긴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사실 로-스쿨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율권을 가진 대학의 일종으로서 그 운영의 대강은 원칙적으로 개별 로-스쿨의 독자적인 설립목표와 교육목표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항이다.[8] 그러나 로-스쿨은 교육제도의 일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공공복리나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률의 형식으로

6) State Bar of Wisconsin Commission on Legal Education, *Final Report and Recommendat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Legal Service provided to the Citizens of Wisconsin,* 1996, 25-26면.

7)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안, 2005.5.9.

8) 대학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제도법정주의 및 기본권 제한에 대한 헌법 제31조 제4항 및 제6항 및 제37조 제2항.

일정한 규제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제는 대학의 자율권의 본질적 내용을 넘어서거나 법치주의의 요청에 의하여 요청되는 헌법 및 법률상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법령안과 인가기준안이 로-스쿨 운영과 관련하여 정하고 있는 요건과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설치기준의 대강

법률안 제5조 제1항은 일정한 설치기준을 갖출 것을 로-스쿨 설립주체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제6조 제2항은 설치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하 교육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안은 인가신청을 위하여 학칙, 교원현황 및 확보계획, 강의실·교수연구실·법학전문도서관·모의법정·세미나실·행정실·정보통신시설 등의 현황 및 확보계획, 교과과정 및 교수방법, 학생정원 및 선발계획, 설치주체의 과거 3년간의 재무제표, 수업료 및 입학금 등 재원과 장학금제도를 포함한 향후 3년간의 재정운용계획, 설치주체 대학에 개설된 법학에 관한 석·박사학위과정의 운용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가신청을 위해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인가후 로-스쿨의 운영에 이런 요소들이 중요한 기준이 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부장관에게 구체적인 세부설치인가기준을 정할 수 있는 권한에 따라 이를 구체화한 인가기준안이 교육부의 관여하에 연구용역결과의 형태로 공표되어 있다. 이 인가기준은 교육목표, 학생복지,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교육시설, 재정, 관련학위과정 등 8가지 항목에 걸친 인가기준과 세부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2. 정원

법률안 제7조는 교육부장관에게 유관기관과의 협의하에 로-스쿨의 총입학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로-스쿨의 입학정원은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시행령안은 개별 로-스쿨의 연입학정원의 최대치를 150인 이하로 제한하였다.

3. 교원

법률안 제16조는 편제완성 연도의 학생정원에 연동하여 교원 1인당 학생수 15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모든 로-스쿨은 최소 20인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체교원 중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자격이 있고 5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시행령안 제8조는 출범당시의 교원수를 교수 1인당 12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교원당 교수시간을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을 원칙으로 하면서 필요한 경우 학칙에 달리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재정 및 장학제도

법률안 제17조 제2항은 로-스쿨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장학금제도 등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인가기준연구안은 장학금 확보내역과 지급계획에 기초한 인가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장학금이 성적우수자와 사회취약계층의 적정한 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지가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 또한 학교회계의 적정성(운영수입과 운영지출의 균형성, 수입구성의 적합성), 재원조달계획의 안정성과 적절성 등을 잘 준수할 필요가 있다.[9)]

5. 학위

법률안 제18조는 3년 이상의 수업연한에 기초한 로-스쿨의 기본학위를 석사학위로 하고 학칙에 따라 박사학위나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안 제10조는 학술학위의 경우 박사학위의 경우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안 제19조는 석사학위과정의 이수학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점이상으로 학칙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안 제11조는 90점을 최저이수학점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시행령안 제11조 제2항은 법학기수자나 외국학위과정에서의 이수학점을 15학점 이내에서만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설치인가심사기준연구안은 학위과정 및 연구과정의 운영계획의 적정성을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수업연한, 교육과정의 적성성, 교원배치의 적

9) 한국학술진흥재단,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분야 설치인가 심사 기준 연구,** 2006, 348-361쪽.

절성이 구체적인 평가지표가 될 수 있다.[10)]

로-스쿨 설립초기에는 학부에서의 법학교육과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임시적 조치들이 로-스쿨의 운영방안에 포함되어 논의될 필요가 있다.[11)]

6. 교육과정

법률안 제20조는 로-스쿨 교육이념에 부합하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고 그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시행령안 제12조는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하는 교과목"을 개설하도록 요구한다. 특히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을 교과목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연구안은 특히 다음의 항목을 평가지표로 삼고 있다.

○ 교육과정이 교육이념, 교육목표, 특성화목표를 구체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12)]
○ 전공이수과목간의 체계성[13)]
○ 필수과목의 수와 지정과목의 적절성[14)]
- 필수과목은 35학점을 초과하지 않을 것
- 필수지정과목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어 있을 것
○ 전공선택과목의 다양성과 적실성[15)]
○ 교육과정의 유연한 개발 및 변경・강의평가제도・교육방법개선의 지원프로그램 및 그 운영의 수월성[16)]
○ 교수요목의 적절성[17)]
○ 학사관리의 엄정성[18)]

---

10) 한국학술진흥재단, 전게서, 365-373쪽.
11) 한국학술진흥재단, 전게서, 372-376쪽.
12) 한국학술진흥재단, 전게서, 172-175쪽.
13) 한국학술진흥재단, 전게서, 176-178쪽.
14) 한국학술진흥재단, 전게서, 182-190쪽.
15) 한국학술진흥재단, 전게서, 191-196쪽.
16) 한국학술진흥재단, 전게서, 197-200쪽.
17) 한국학술진흥재단, 전게서, 208-212쪽.
18) 한국학술진흥재단, 전게서, 213-216쪽.

- 수업일수의 확보계획/ 출결관리의 엄격성/ 성적관리의 엄격성/ 유급관리제도/ 재수강제도 및 수강철회제도의 적절성/ 졸업요건의 적절성

○ 실무교육을 위한 외부연계[19)]

- 실무수습기관의 적실성/ 외부연계교육프로그램의 적실성[20)]

○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의 적절성과 외부연계[21)]

- 지역적 특성 및 졸업후 진로와의 연계성/ 선택과목에서의 30학점 이상 특성화 과목에 배정되어 있는 지 여부/ 특성화교육프로그램의 충실성/ 산학협력기관의 존재여부 및 적실성

7. 입학

법률안 제22조는 학사학위 혹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입학자격으로 한다. 제23조는 학생선발과 관련하여 일반전형[22)] 또는 특별전형[23)]의 과정으로 학위과정의 성적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법조인의 자격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하 "적성시험")결과를 필수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고 그 밖에 어학능력,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경력을 임의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은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없도록 금지시켜 놓고 있다.(법률안 제22조 제2항)

한편 법률안 제25조는 학생구성의 다양성을 위하여 법학외의 분양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와 로-스쿨 설치 대학외의 대학졸업자가 각각 입학자중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개별 로-스쿨에 부과하고 있다.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연구안은 특별전형과 관련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분류기준을 평가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법학미수자나 타대학출신자의 입학할당이 전체 입학자의 3분의 1을 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비율이 높을수

---

19) 한국학술진흥재단, 전게서, 217-224쪽.

20) 특히 외부연계프로그램의 경우 3개국 3개이상의 대학이 최상급판정으로 최고점을 얻을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21) 한국학술진흥재단, 전게서, 225-230쪽.

22) 시행령안 제14조 제1항은 일반전형을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정의하고 있다.

23) 시행령안 제14조 제2항은 특별전형을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정의하고 있다.

록 높은 평가를 받도록 인가기준을 제안하고 있다.[24] 이 심사기준연구안은 입학전형에 교육목표 및 특성화목표가 구체적, 효율적, 체계적으로 잘 반영되어 있는가도 평가기준이 될 수 있음을 예시하고 있다.[25]

8. 학생복지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연구안은 학생복지를 위한 다음 항목을 평가내용으로 제안하고 있다. 위에서 별도로 제시된 부분을 제외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26]

○ 교수의 학생별 개인지도 수준
- 학기당 일정 지도시간/ 지도에 따른 보수나 업적평가반영방안/지도활동의 선택성과 사후평가제도
- 인트라넷상 지도학생 관리시스템, 인사 및 수당규정, 지도교수제도 운영규정

○ 학생지도센터
- 독립공간확보/ 교수급 전문인력/ 지도프로그램/ 지도센터활동평가제도

○ 학생복지시설
- 장애인시설/ 자치활동시설과 예산/ 학자금대여제도

○ 학사지원행정체계
- 학사지원부서의 조직과 예산

9. 연구지원

법령안은 연구지원과 관련하여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로-스쿨 설치인가심사기준연구안은 다양한 연구지원과 관련한 평가항목을 제시하고 있어 로-스쿨 운영의 중요내용을 상정하고 있다.

○ 연구시설 및 자원의 확보[27]
- 연구소 구성 교수의 적정성/ 유급 연구원수의 적정성/ 연구소 사무전담직

24) 한국학술진흥재단, 전게서, 163-164쪽.
25) 한국학술진흥재단, 전게서, 169-170쪽.
26) 한국학술진흥재단, 전게서, 122-146쪽.
27) 한국학술진흥재단, 전게서, 231-235쪽.

원 및 조교수의 적성성

○ 연구소의 활동[28)]

- 국내외 학술행사/ 잡지발간[29)]/ 연구프로젝트 수주 및 수행의 충실성

○ 특성화[30)]

- 연구목표 및 운영계획의 특성화관련성/ 특성화분야 전공유급연구원 확보/ 특성화관련 국내외 학술행사 개최

Ⅳ. 로-스쿨 운영방안에 대한 세부검토[31)]

이하에서는 법령과 인가기준에 제시된 것을 토대로 특별히 각 로-스쿨 별로 구체화의 필요성이 강한 운영방안을 크게 여덟 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 본다.

1. 입학관련 세부 고려사항

(1) 전형의 대상

입학전형은 대학학부 졸업자나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필요로 한다. 학부에 법과대학을 잔존시킨 일본의 경우 법학기수자의 경우와 미수자를 구별하는 입학전형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경우에도 입학전형에서 미수자 비율을 전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령안의 경우 학사관리에서 미수자와 기수자를 구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학적 소양에 대한 평가를 입학전형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때문에 학부법학교육과정을 이수하였는지의 여부보다는 잠재능력을 중심으로 입학전형이 이루어지고 주요 상위 로-스쿨의 경우 미수자의 비율이 기수자의 경우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28) 한국학술진흥재단, 전게서, 236-242쪽.

29) 학술잡지의 발간수, 논문심사의 개방성, 논문게재의 개방성, 편집 및 운영의 절차를 포함하여 특성화여부도 주요한 평가지표가 된다.

30) 한국학술진흥재단, 전게서, 243-246쪽.

31) 이 섹션에서 인용된 미국와 일본의 로-스쿨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특별한 개별인용이 없는 한 다음 웹사이트에서 인용한 것이다.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http://www.law.columbia.edu/home); 일본 도꾜대 로-스쿨(http://www.j.u-tokyo.ac.jp/sl-2/gaiyou/GAIYOU.htm); 일본 와세다대 로-스쿨(http://www.waseda.jp/law-school/index.html).

이외에도 변호사자격시험의 성격에 따라 개별 로-스쿨의 기수자에 대한 선호여부가 달라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 현행과 같은 사법시험의 변종으로 변호사시험이 있게 되면 기수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우리나라의 로-스쿨 법령안이 로-스쿨을 도입하는 대학에서 학부법학교육단위를 둘 수 없도록 함에 따라 타대학출신자를 어느 수준까지 입학정원에서 할당할 것인가가 로-스쿨간의 경쟁에 주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2) 전형의 구분과 시기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의 비율과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별전형의 경우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각 대학의 창의적 노력이 반영되기 쉬운 영역이라는 점에서 각 로-스쿨의 특성이 강하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다.

(3) 입학전형의 방법과 시기

입학전형에는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성적과 적성시험의 반영이 필수적이지만 그 반영의 비율은 자율적이므로 이 또한 로-스쿨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다. 어학능력 및 사회활동능력도 각 로-스쿨의 교육이념, 교육목표, 특성화목표와 관련하여 그 반영비율이 정하여 질 것이다.

미국의 경우[32] 정량적 지표로서 우리의 적성시험에 해당하는 LSAT(Law School Admission Test), 학부성적(GPA, Grade Point Average)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법령안이 모델로 삼은 것 같다. 이외에 정성적 평가지표로서 지원서상의 경력사항, 자기소개서(personal statement), 추천서 등을 활용한다. 드물게 평가면접(evaluative interview)이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 미국의 경험으로부터 시사점을 찾는다면 적성시험과 학부성적이 꼭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33] 즉 성적순으로만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정성평가자료를 통해 종합적인 판단을 한다. 특히 주요 로-스쿨의 경우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려가 지배적이다.

최근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의 경우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특기할 것은 소논문

32) 미국의 입학전형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재협, “미국 로스쿨의 학생선발방법”,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 제2호(2006), 287-305쪽과 주요 로-스쿨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였다.

33) 이재협, 전게서, 296쪽.

시험 즉 논술시험과 면접을 전형요소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또한 외국어 능력을 고려한다는 점에서도 미국의 경우와 구별된다. 아마도 세계화(globalization) 추세에 따라 영어가 중심적 언어가 되고 법실무에 있어 영미법의 주도성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처럼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으로 삼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아래 [표 1]에 나타난 도꾜대의 경우에서 보듯 사회적 경력이 있는 학생의 비율도 비교적 높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34)]

[표 1] 도꾜대 로스쿨 입학자 구성분포내역

	2004년	**2005년**
입학자	308명	306명
사회인 경험이 있는 사람	99명	78명
타 학부 출신자	95명	81명
도꾜대학 출신자	184명	174명
타 대학출신자	124명	132명

자료: http://www.j.u-tokyo.ac.jp/sl-2/gaiyou/GAIYOU.htm(확인일: 2006.10.15)

전형의 시기는 입학전형의 방법에 따라 다를 것이다. 필답고사와 면접이 일반화된 일본의 경우는 정시모집이 원칙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미국의 경우처럼 수시로 선발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정시모집과 수시모집을 혼합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입학담당관제도의 도입 필요성

특기하고픈 부분은 입학행정의 전문화이다. 현재 국내대학의 경우 행정전문성의 취약이 교원의 행정부담도의 증가로 인한 교육 및 연구역량의 약화를 낳는 한편 입학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독립성과 자율성에 따른 독자적 입학지표를 축적하고 입학전형

34) 이 같은 경향은 로-스쿨주무부처인 문부성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인가기준 및 사후평가시 사회인입학비율이 평가기준이 될 것이므로 개별 로-스쿨들은 사회인비율에 신경을 쓰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이런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이재협, 전게서, 297쪽.

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처럼 입학업무와 관련하여 입학담당관제도(admission office)를 별도로 둘 필요성이 있다.

(5) 공고 및 광고 등

입학전형에 대하여 홈페이지나 팜플렛을 통한 공고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 입학박람회 등이 필요하게 될 전망이다.

2. 학사관리

(1) 정원

개별 로-스쿨의 입학정원은 최대 150명으로 법령에 의해 규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정원규제의 불합리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부족함이 없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로-스쿨형 교육모델에서 정원통제는 교육투자를 제한하고 등록금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장애가 된다. 설립초기의 제도 정착을 위한 고육지책이라 이해하더라도 정원규제는 최대한 조속히 현실화되어야 한다.

로-스쿨법령안의 인가기준에 의하면 교원정수가 최소 20인이 되어야 하므로 학생정원도 연 80명이 최소인원이 된다. 그러나 변호사의 질을 고려할 염려가 최소 규모 로-스쿨의 크기를 규제하는 현실적 이유일 수 있지만 다양성과 전문성을 추구하는 로-스쿨의 취지에서 보면 꼭 거대 로-스쿨만이 추구되어야 할 필연적 이유는 없다. 일본의 경우 정원 30명의 로-스쿨도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도 인가기준의 완화와 더불어 진정으로 특성화된 로-스쿨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2) 이수학점

로-스쿨 법령안은 3년 과정에 90학점 이상을 졸업이수학점으로 법제화하고 있다. 각 대학의 교육목표에 따라 이수학점을 여하히 배분할 것인가가 주요한 결정과제가 된다.

일본의 경우에는 아래 [표 2]의 와세다 로-스쿨의 경우에서처럼 필수과목의 비중이 전체 이수과목의 3분의 2 수준에 육박한다.

[표 2] 와세다 로-스쿨의 수료필요단위/이수가능단위

	필수	선택필수	워크샵	공통선택*	합계
수료필요단위	60	10	8～20	6～18	96
이수가능단위	60	10	8～20	18～28	108
필수			선택필수		
법률기본과목 실무기초과목	56 4		법의기초이론・ 기초법・외국법・인접과목 실무기초과목	2 4 4	
계	60		계	10	

* 공통선택과 워크샵은 합하여 26학점까지만 이수가능.

(자료: http://www.waseda.jp/law-school/jp/education/class.html)(확인: 2006.10.15)

반면 미국의 경우 필수과목이 비중이 높지 않다. 미국 주요 로-스쿨들의 경우 필수과목은 1학년 과정에서 핵심적인 법률기본과목과 법률문장론 및 법조윤리 등 전체이수학점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일본이 법관의 역할을 염두에 둔 전통적인 법학교육을 지향하는 경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며 미국의 경우 변호사중심의 법학교육을 지향하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35] 개별 로-스쿨이 지향하는 교육목표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로-스쿨로의 개혁목적에는 미국식의 변호사지향적 교육과정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 점에서 인가기준연구안이 필수과목의 비중이 과도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교육과정[36]

교육과정에 대한 상세한 검토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난다. 필자는 별도의 글[37]에서 이 점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를 한 바 있으므로 그 요지와 교육과정 개편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본다.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법령안의 교육과정과 관련한 내용은 기본적인 법률지식교육, 법조윤리교육, 실무기초교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38]

35) 김정오, 전게서, 96-104쪽; 김종철, 전게서(**동아법학**), 302쪽 참조.

36) 교육과정은 교육방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 논하지 아니한다. 교육방법에 대한 필자의 소견은 김종철, 전게서(**동아법학**), 307-313쪽 참조.

37) 김종철, 전게서(**동아법학**), 299-307쪽 참조.

38) 이 같은 법률안의 태도는 미국변호사협회의 인가기준이 되는 교과과정의 요구조건과

그러나 로-스쿨 설립목적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교과과정은 당해 로-스쿨에서 정하는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고 교육내용은 개별 로-스쿨의 설립목적, 교원과 교육시설의 수준과 성향, 재정상태, 학생정원, 특성화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즉,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말이다. 다만, 일본 로-스쿨의 경험[39]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흐름을 일별하면 다음 [그림 1]과 같은 흐름도를 구상해 볼 수 있다.

[그림 1] 로-스쿨 교과과정 흐름도

그림에서 법률 기본 과목은 법학의 기초를 제공하는 기본법분야의 과목으로 크게 공법계 과목, 민사계 과목, 형사계 과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도꾜대 등 일본의 로-스쿨에서는 법률기본과목을 각 계열별로 초급, 상급, 종합으로 세분화하여 연차별로 제공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법률기본과목의 종합강좌는 강의소재를 특화하여 일상에서와 같이 하나의 사실관계로부터 법률기본과목은 물론 전문

유사하다. ABA Standards Sec. 302 참조.

39) 일본에서는 2003년 5월 1일자 문부과학성고시 제53호 '전문직대학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건' 제6조에서 교과과정을 법률기본과목, 법률실무기초과목, 기초 법학·인접 과목, 전문·첨단전개과목의 네 종류로 분류한 이후 모든 로-스쿨이 이러한 교육과정 분류를 따르고 있다.

법학과목과 연계된 법적 사고를 연마하는 강좌로 자리매김된다.

법률실무기초과목은 실무에서 사건을 처리하게 되는 기본적인 흐름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고 법원칙과 이론이 실무에 대해 운용되는 체계를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꾜대의 경우 민사실무기초, 형사실무기초, 법조윤리, 모의재판, 민사변호연구, 민사사실수집・인정, 법률상담클리닉, 국제계약교섭, 법과 교섭 등의 과목이 개설되고 있다.

기초 법학・인접 과목은 변화하는 사회속에서 새로이 제기되는 법적 과제들에 대하여 기존의 법적 대응을 뛰어넘는 새로운 법형성과 법발견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초능력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도꾜대의 경우에는 "법을 다면적・다각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퍼스펙티브', 법의 근저에 있는 사상・철학과 현대법의 과제를 접합하는 '현대법의 기본 문제'"[40]를 필수과목으로 제시하고 기타 사회과학 및 인문과학과 연계된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이 점은 와세다 대학의 경우에도 동일한데 예를 들어 인접과목으로 법과 공공정책, 사회보장정책론, 법과 재정학, 법과 경제학, 법률가를 위한 회계학, 법과 심리학, 법의학 등을, 기초법학과목으로는 법철학・법사상사, 법사학, 법사회학을 제공하고 있다.

전문과목은 일본에서 전개・첨단 과목으로 분류되는 과목군으로 전문적 지식과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법학과목으로 도꾜대의 경우 국제거래법, 국제조세법, 국제경제법, 국제인권법, 경제형법, 기업연금법, 금융법, 기업노사관계법 등이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로-스쿨 교과과정 흐름도를 통해 로-스쿨이 지향하는 교육은 전통적인 송무위주의 법률가만을 양성하는데 중점이 있지 않다. 또한 한국의 현실은 전문법분야에 대한 법학자들의 연구와 교육이 부족한 탓에 법을 전공하지 않은 타전공자들이 정책위주의 마인드에서 법에 대한 기초연구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로-스쿨이 사법관료의 재충원을 위한 법학교육을 지향하지 않고 사회의 법률서비스수요에 대응하는 법률가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면 법적 사고에 바탕한 다양한 정책적 사고력도 충분히 배양시킬 수 있는 종합적 교과과정이 고안되어야 한다. 특히 전문법영역에 대한 연구역량의 강화가 필수적이며 전문법영역 교과과정의 상설화는 단순한 교육의 필요성을 넘어 법학의 연구영역 확대의 부가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40) http://www.j.u-tokyo.ac.jp/sl-2/gaiyou/GAIYOU.htm에 소개된 수업과목의 종류 참조.

한편으로는 법교육의 전문화와 사회조응성의 강화는 시장의 경제적 유인에 따라 법학교육과 연구에 있어 자본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로-스쿨제도의 도입이 변화하는 법률서비스시장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법률 비즈니스(law business) 운영자로서의 법률가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법학이 자본의 치마폭에 휩쓸리지 않도록 민주적 법치주의의 확산을 위한 교육내용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교육체계에서 변호사자격시험과 교과과정의 연계성도 고려대상이다. 로-스쿨이 교육을 통한 법률가양성을 추구하는 한 현재와 같이 수험생을 합격시키는 절대기준에 따른 선발이 아닌 탈락률을 정해 둔 정원제 사법시험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로-스쿨의 법학교육의 목적이 법률가로서의 전문교육에 바탕한 잠재능력의 개발에 있는 만큼 일정수준의 법률전문성을 갖춘 경우 무리없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그 시험준비로 로-스쿨의 교과과정이 왜곡되는 현재와 같은 상황은 회피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은 특성화와 국제화이다. 특성화의 전략에 맞는 맞춤형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41] 예를 들어, 공익관련 법률가, 기업전문법률가, 국제기구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 연차별 유관과목들을 연계하여 수강할 수 있는 교과과정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또한 국제화는 inbound와 outbound를 모두 고려하는 종합적인 설계를 요구한다. 로-스쿨이 단순히 국내지향적 법학교육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세계화시대에 대응하는 적극적 발전전략의 일환이라면 한국의 로-스쿨이 세계교육시장에서 어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외국어강의의 확대, 외국교수의 초빙, 외국학생들에 대한 지원제도 등 국제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뉴욕대 로-스쿨의 국제 로-스쿨 프로그램

41) 인가기준안에 따르면 특성화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로-스쿨이 특성화를 주요과제로 삼아야 하느냐는 법학교육의 목적을 고려하여 정책론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세부 특성화 전략을 시장의 필요에 맞추어 개별 로-스쿨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로-스쿨은 기본적으로 법률가의 잠재능력을 개발하는 교육기관이며 모든 로-스쿨이 특화된 법률가를 양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개의 로-스쿨은 다양한 법분야의 법률가를 배출할 것을 목표로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소규모의 특화된 로-스쿨의 존재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다양한 분야의 법률가를 배출한다고 하더라도 연구와 교육면에서 상대적으로 강화된 특화프로그램을 개별 로-스쿨들이 선택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의 특성화논의는 이런 제한된 의미의 것이다.

(global law school program) 등 선진적인 국제화 노력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이다.

(4) 유급제와 상대평가제

로-스쿨 졸업이 변호사자격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로-스쿨의 학사관리는 엄격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대개 엄격한 유급제를 통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도꾜대의 경우 매학년 필수이수단위수의 3분의 2를 이수하지 못한 경우 유급되며 유급된 해의 이수단위는 모두 무효가 된다. 또한 2년 연속 유급하는 경우 제적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엄격한 학사관리는 졸업생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있어서 변별력을 부여함으로써 달성된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는 상대평가제를 도입하고 재수강제도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5) 강의평가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도입되었듯이 교육강도가 강화되는 로-스쿨 체제에서는 강의평가를 통해 강의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여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이 긴요하다.

3. 별도의 학위과정

로-스쿨 제도의 출범과 함께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쇠퇴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학문후속세대양성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런데 시행령안에 따르면 이런 목적의 학술학위과정은 박사과정만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왜 학술학위과정으로 석사과정을 둘 수 없는 지 분명하지 않다.[42]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러한 규제는 불필요하다.

여하튼 이 경우에도 다른 학위과정과 연계과정의 개설을 금지하는 지는 분명하지 않다. 법과 정책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공동프로그램의 개발은 로-스쿨의

42) 여기에서 학술학위과정으로서의 석사과정이라 함은 로-스쿨이 아닌 학부법학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로-스쿨 법무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 모두를 상대로 전문법학교육과정과는 별도의 석사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 과정의 졸업생은 변호사자격시험 혹은 사법시험의 응시자격과는 무관하다. 이 과정을 논문과정으로 운영할 것인지 교과이수과정으로 운영할 것인지는 각 로-스쿨의 자율에 맡길 사안이다.

재정확충의 필요성이나 로-스쿨에 소속된 자원의 효율적 재활용 및 로-스쿨 교육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은 연계학위과정(joint degree program)으로 경제학, 행정학, 언론학, 경영학, 건축학(도시계획관련) 등의 전공을 타학과 및 전문대학원과 함께 석사학위과정 혹은 박사학위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43] 이외에도 국제 및 국내학점교환프로그램, 국제이중학위프로그램 등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의 경우 독일의 Bucerius 로-스쿨 등 11개국 13개교와 학점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영국 런던대학의 LL.M. 프로그램, 프랑스 소르본 대학 법학과의 석사과정 등과 이중학위프로그램 제공하고 있다.

4. 학생복지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연구안이 교수의 학생별 개인지도, 학생지도센터, 장애인시설 및 자치활동시설 등 학생복지시설, 학사지원행정체계를 평가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양질의 법조인양성에 필요한 교육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요건이다.

이외에도 미국 로-스쿨의 경우 학생복지차원에서 주요한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 취업지원센터(career development center)이다. 학생들에게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인터뷰 방법에 대한 워크샵 등을 제공하는 한편 각종 취업박람회나 인터뷰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동문들과 재학생을 연계한 조언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취업에 대한 다양한 준비과정이 가능하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로-스쿨 이후의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논의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미국식 취업지원센터가 어느 정도까지 활용될 수 있을 지 미지수이지만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기관으로서의 로-스쿨 제도에서 개별 로-스쿨간 경쟁에서 우월을 가름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또한 로-스쿨제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등록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로-스쿨제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불리한 교육제도라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시스템을 통해 양질의 법률가를 대량으로 양성하는 체제로의 전환은 법치주의의 발전과 세계화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고부가 법률서비스 산

43) http://www.law.columbia.edu/jd_applicants/jd_prog/joint_degree(확인일: 2006.10.15).

업의 발전을 추진하려는 보다 중요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결국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로-스쿨제도와 병행하여 추진될 때 로-스쿨 제도 도입의 목적도 충실히 추진될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험에 의하면 초기 제도의 도입기에는 국고보조를 통한 장학제도가 긴요하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기금을 통한 장학제도와 등록금 대부제도를 활성화하는 것도 로-스쿨을 출범시키는 기관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과제가 된다.

5. 연구지원

법학연구소의 활성화와 학술지의 발간 등 연구활동과 관련한 로-스쿨 인가기준연구안의 여러 기준들은 로-스쿨을 제대로 운영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기본적 요청이다. 연구지원과 관련하여 특기할 것은 로-스쿨에서는 교육강도의 강화에 따라 강의준비에 투여되는 비용이 증대되는 데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교육강화의 결과 약화된 연구의 증진을 위해서는 연구 인센티브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 교원지위의 유동화를 증대시켜 휴식년을 탄력있게 운용하고 연구전임교수제의 도입이나 연구업적 및 연구프로젝트 수주와 결부된 강의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재정

재정의 확보는 로-스쿨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요소이다. 초기 설비 및 제도 확충을 위한 투자를 비롯하여 교육 및 연구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력과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금의 법학교육제도에서와는 비견할 수 없을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다양한 기금을 모금하고 그에 바탕한 재테크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마련하는 한편 각종 연구비 수주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충실한 재정기반이 있어야 수월성 높은 교육 및 연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44]

특히 초기 로-스쿨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일본의 경우처럼 국가보조와 세제지원이나 수익사업의 확대허용 등 각종 지원정책은 절대적이다. 우리의 경우 이

---

44) 미국의 경우 개인별 등록금이 다른 학문분과나 다른 국가의 법학교육기관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지만 오히려 등록금의존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특히 필자의 관계자와의 비공식면담과정에서 예일 로-스쿨의 경우 등록금의존율이 전체 로-스쿨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35%정도로 소개되고 있다.

러한 지원정책을 이끌어 내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 전제조건으로 개별 로-스쿨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재정의 투명성의 확보와 로-스쿨의 재정조달 및 운용의 독립을 위한 청사진과 실질적인 추진의지를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자체 재정조달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로-스쿨들이 다양한 졸업생대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졸업생과 재학생, 타학과 동문과 로-스쿨, 로-펌과 로-스쿨간의 연계체제를 구축해 온 경험이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연구비를 수주하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의 마련과 법조관련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 등 교육 및 연구역량의 강화를 통한 재정의 충실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이런 과제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재무담당 행정전문조직을 구비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7. 행정 및 의사결정시스템의 개선

앞서 로-스쿨의 운영과 관련하여 긴요한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그 과정에서 요소요소에 로-스쿨 체제에서 긴요한 행정지원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언급하였다. 재정, 학사지원, 입학관리 등에서 행정전문화는 로-스쿨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긴요한 부분임은 췌언을 요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로-스쿨제 도입의 목적중의 하나인 국제화를 위해 국제업무, 국내외의 학생유치과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홍보업무 등을 위한 행정전문화도 한국의 개별학문 교육기관들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과제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기존의 의사결정시스템으로는 이처럼 복잡하고 거대한 조직운용을 필요로 하는 로-스쿨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기대할 수 없다. 학장을 비롯한 보직체계, 교수회의 역할, 학생자치기구의 역할 등에 대한 종합적인 구조개혁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Ⅴ. 결론을 대신하여 - 로-스쿨의 성패결정요인

세계화시대는 무한경쟁의 시대이다. 무한경쟁의 시대에 국가 및 사회의 경쟁력은 합리적이고 기대가능성 높은 경제 및 사회활동의 추구이다. 이러한 체제에서 모든 사회생활, 특히 경제생활에서의 전문화된 법률서비스의 지원은 선택이 아니

라 필수가 되고 있다. 또한 민주화는 법과 법전문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외의 급격한 변화는 양질의 법률가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체제로의 법학교육과 법률가양성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 유력한 방안으로 로-스쿨 제도가 논의되어 입법화단계에 있다. 그러나 그 성사여부는 이해관계자의 반대등 여러 이유로 여전히 불투명하며 입법화 이후의 시행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특히 법학교육의 패러다임이 근원적으로 변화됨에 따라 법학계도 무한경쟁의 소용돌이로 내몰려질 가능성이 높다. 경쟁이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지만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고사시키는 독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학교육개혁의 올바른 정향성을 유지하면서 그 폐해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설계와 투자, 그리고 그 성취를 위한 열정과 비전의 공유가 긴요하다. 특히 로-스쿨 운영의 성패는 그 도입의 목적인 법학교육의 다양성과 전문성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각 로-스쿨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주요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학교육, 학사제도, 교육과정

<Abstract>

How to Operate a Korean Law School

Jongcheol Kim*

This essay aims at examining how to operate a Korean Law School. The author begins with proposing an ideal type of a Korean Law School as a professional legal education institution rather than a substitute of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Given that ideal, he moves on to analyse the Korean Law School Bill and its ancillary presidential decree proposal together with a report regarding standards for approval of law school. Finally, he addresses some key issues which seem necessary to be checked up in the course of launching a new style legal education in Korea. They include admissions, finance, curriculum, student welfare, academic and student affaires, research facilities, educational objectives, specialization strategy. Instead of giving a concrete summary of his analysis in the conclusion, the author gives a general prospect that a law school system may force legal scholars to encounter infinite competition between legal education institutions in terms of not only legal education and research but also school administration. In addition, he points out that the success of the new legal education system depends upon how much liberal system is introduced as well as how strong and pervasive the vision and will of actors in legal education and legal service market are.

Key words: Korean Law School, legal education, law school administration, law school curriculum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Law, Yonsei University